

□ 우대사항

- 사회 형평적 채용 및 우수 인재 발굴을 위하여 전형단계별 가점 부여

<우대 기준(가점부여)>

전형 단계	대상자 및 우대 기준	비고																		
필기 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훈취업지원대상자 : '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등에 따라 만점의 5~10% ※ 단,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이 합격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 	-																		
서류 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훈취업지원대상자 : 필기전형 가점 부여 기준과 동일 ○ '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'에 따른 장애인 ○ 거주지 해당 시·군·구청에 저소득층으로 등록된 자 ※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,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○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른 "청년" ※ 접수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○ 지역(서울, 경기,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) 인재 ※ 학사 이상자는 학사, 재학/휴학생의 경우 소속 학부 소재지 기준 ○ 이공계 전공자 ※ 학사 이상자는 학사기준 ○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자 ※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○ SW역량지수(TOPCIT) 정기평가 성적 우수자 ※ 300점 이상,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취득(https://www.topcit.or.kr 참조)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보훈자</th> <th>장애인</th> <th>저소득층</th> <th>청년</th> <th>지역인재</th> <th>이공계</th> <th>한국사</th> <th>TOPCIT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점</td> <td>5~10점</td> <td>5점</td> <td>2점</td> <td>3점</td> <td>1점</td> <td>3점</td> <td>1점</td> <td>2~3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TOPCIT 정기평가 : 300점~399점 2점, 400점 이상 3점</p>	구분	보훈자	장애인	저소득층	청년	지역인재	이공계	한국사	TOPCIT	가점	5~10점	5점	2점	3점	1점	3점	1점	2~3점	최대 10점
구분	보훈자	장애인	저소득층	청년	지역인재	이공계	한국사	TOPCIT												
가점	5~10점	5점	2점	3점	1점	3점	1점	2~3점												
면접 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보훈취업지원대상자 : 필기전형 가점 부여 기준과 동일 	-																		

(비수도권 지역인재) **대학까지의 최종학력**(대학원 이상 제외)을 기준으로 서울·경기·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(예정)·중퇴한 자 또는 재학·휴학 중인 자

□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

가.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「고등교육법」상의 ‘대학, 산업대학, 교육대학, 전문대학, 기술대학, 각종학교’
- (2)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
- 대상 :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,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,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,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(그 외 제2캠퍼스는 미해당)
※ 2019년도 대학알리미(www.academyinfo.go.kr) 공시 기준으로 분류하며, 지원 전 대학알리미를 통해 출신학교가 2019년도 기준으로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여부 확인 요망
- (3)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·경기·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
- (4)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

나.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

- (1) 본교가 서울·경기·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·경기·인천 지역대학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
- (3) 사이버대학, 디지털 대학 등 「평생교육법」상의 평생교육시설
- (4)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

□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

- (1)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
- (2)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·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
- (3) 대학원 및 사이버·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, 학점 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,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